

외부단체 가입 및 활동 관련 (개정안)

본 규정은 학생의 외부단체 가입 및 활동에 관한 학교의 공식 기준을 정하고, 학생 보호 및 학교의 질서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생이 외부 협회, 학회,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등(이하 "외부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고자 할 경우, 학교의 공식 보증이나 추천이 아닌 개인 자율적 선택임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수 또는 직원이 학생에게 특정 외부단체 가입이나 활동을 권유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교무부총장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학생이 학교 명의(학과, 학교 로고, 직위 등)를 사용하여 외부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교무부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학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협력하는 외부단체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생공지사항에 고시하며 그 외 단체는 학교의 보증을 받지 않는다.
5. 학교는 외부단체의 회비, 자격증 발급비용, 또는 임원 참여 등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법적 문제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학생은 외부단체 가입 또는 활동 시, 본인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책임을 지며 필요 시 학교가 제시하는 확인서 또는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다.

(추가 조항)

추가 1) 교수 또는 직원이 외부단체를 설립 운영하거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자격증, 수료증, 직함 발급, 유료 프로그램 운영, 회원 모집 활동을 포함), 해당 활동이 재학생 및 졸업생과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교무부총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학교가 정하는 이해충돌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추가 2) 교수 또는 직원은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특정 외부단체 가입, 자격 취득, 유료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권유하거나 유도하거나 또는 홍보해서는 안 된다. 단, 학교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해, 학교가 지정한 공식 채널을 통해 제한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

추가 3) 외부단체 가입 또는 활동이 학업 성취, 실습 배정, 평가, 추천서, 졸업 요건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연계되거나 요구되거나 또는 암시되어서는 안 된다.

추가 4) 외부단체가 발급하는 자격, 수료증, 직함 등의 명칭이나 사용 방식이 주(State) 공인 면허 또는 임상적 치료 자격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경우, 학교는 이를 보증하지 않으며 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윤리적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추가 5) 교수 또는 직원은 외부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의 자산(학생 연락처/이메일 리스트, 강의자료, LMS/학교 시스템, 학교 로고, 학교 행사 공간 등)을 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추가 6) 규정 위반 시 학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서면 경고, 직위(디렉터/책임자) 조정, 학생 지도와 실습 관련 업무 제한, 인사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생의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 명의 사용 중단, 관련 공지 철회, 경고 또는 학칙에 따른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시행: 본 개정안은 공지일로부터 시행한다.